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13시 07분



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대상 및 기간	3
구비서류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	3
유의사항	4
과태료	4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이전등록 ▪ **변경등록** ▪ 신규등록 ▪ 말소등록 ▪ 저당권설정/말소등록 ▪ 임시운행허가
- 등록증(번호판)재발급 ▪ 등록원부발급 ▪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

수수료

증지대 -1,300원, 등록세-15,000원

관련법규

- 시도간변경등록 : 자동차관리법 제11조,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,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
- 등록번호변경 : 자동차관리법 제16조, 자동차등록령 제24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
- 기타 변경등록(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) : 자동차관리법 제11조,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,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

대상 및 기간

구분	기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①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②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③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④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⑤ 자동차의 용도 >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	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(전남)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▪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	없음

구비서류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

구분	구비서류
----	------

공통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경등록신청서 · 자동차등록증 ·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· (법인)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※ 위임사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 또는 법인 인감 날인)
추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라남도 전입자(시·도간 변경) ‣ 지역번호차량 ‣ 전국번호차량중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	· 번호판(2개), 봉인(전국번호차량 제외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번호변경 ‣ 지역번호 → 전국번호 변경 ‣ 승합차 → 승용차로 변경 	· 번호판(2개), 봉인
	법인·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 : 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·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사본 · 폐업 : 폐업사실증명 ※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
	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	· 정정사항 확인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, 기본증명서 등)
	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국인거소 신고증 · 외국인등록증

유의사항

-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,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.
-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같습니다(개인인 경우).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외국인 국내거소자, 법인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(30일 이내)

과태료

기간	금액
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	2만원
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	1만원 (최고 30만원)

Yeosu Web Contents

